

순천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

제정 2011. 1. 14. 개정 2011. 12. 30.
개정 2018. 3. 23. 전부개정 2018. 9. 1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60조의 2에 따라 순천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순천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부 및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,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(이하“위원장”이라 한다) 학생처장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, 재무과장으로 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를 대상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1.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교원 1명
2.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대표 3명
3. 회계 또는 법률전문가 1명
4. 학부모 또는 동문 1명

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천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
2. 회의장소
3. 주요안건

제5조(자료요청) 위원회는 등록금 책정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총장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의록의 공개) 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10일 내에 순천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당 등)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사무국 재무과 재무팀장으로 한다.

부칙 <제906호, 2018.9.12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